

이번 뉴스중에 감사감사, 이전가격, 조세와 세관에 대한 업데이트를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이번 뉴스중에 감사, 이전가격, 조세와 세관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객님의 참고로 다음 처럼 드린다:

Content	Page
감사보고서, 세금과 세관 계산결재문서의 제출시간에 대한 각회사들에 주의로 권고한다.	3
같은 그룹사내 각 기업에게 연구활동진행과 전기, 전자상품들의 설계도면작성의 연결거래중에 가격을 정한문제.	3
2017/01/01일부터 사업등록비의 수금기준 변경, 수금대상의 보충 및 등록세 면제.	4
저소득 각서의 일부 기준의 신고에 대한 안내(양식No.02/CK-TNCN)	5
노동자의 외국출장비용의 공제.	5
수출생산용 수입물건에 대한 면세와 환세되지않는 경우의 추가로 안내.	6
2017년 이후부터 조건이 있는 사업 분야, 업종들의 리스트.	6



1. 감사보고서, 세금과 세관 계산결재문서의 제출시간에 대한 각 회사들에 대한 주의

2016년 12월 31일에 재정년도 말효의 기업들인 경우엔 각 보고와 세금결재신고서를 최후 제출 시간이 2017년 3월 31일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재정보고는 감사보고와 같이 삽입된다. 회사는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된 지점들이 있으면 지점들도 감사된 재정보고가 있어야 된다.
- 기업소득세의 계산신고서중에 발생한 증분적 부록들을 삽입해야 한다.
- 양식 No.03-7/TNDN처럼 연결거래 정보의 신고서.
- 양력 2016년도의 개인소득세 결재 신고서.

행정위발의 각 패널티외에 상기같은 재정보고계산 신고서를 지연재출로 인한 지연 벌금도 있고 법규로의 감사를 해야한 재정보고의 제출된 경우에 감사보고서를 삽입되지 않는 재정보고를 국가 관련 기관들에 제출해주면 벌금을 2.000 만 내지 3.000만 동으로 당하게 된다.

그 밖에, 우리 Grant Thornton 는 각기업들이 면세수입 리스트를 신고했으면 면세수입 리스트를 신고된 관리 세관 기관에 재정년도내 면세수입물의 사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준 책임이 있고 재정년도 종료일부터 늦어도 90번째일에 제출해주어야 한다.

고객님들은 감사보고서,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 검토, 연결거래상 가격 확정진행 과 관련된 각 세관 수속들에 대한 협조를 필요하면 우리 Grant Thornton 전문가들과하고 연락해주시면 된다.

2. 같은 크롭사내 각 기업에게 연구활동진행 과 전기, 전자상품들의 설계도면작성의 연결거래중에 가격을 정한문제.

Bác Ninh성 세무서는 전기설비 센터(기업의 한 부분으로)가 있는 경우엔 전기, 전자상품들의 연구, 설계도면작성의 상품들이 기업의 상품생산, 영업에 사용해서 (i) 그리고 같은 크롭사의 외국기업들에 공급해줌 (ii) 에 사용하면:

- 전기, 전자상품들의 연구, 설계도면작성의 활동은 같은 크롭사의 외국기업들에 공급해줌 (ii) 외국에 팔아준 제출기업의 서비스 공급활동이다.
- o (ii)부터의 수금액은 기업의 서비스공급의 소득이다. 기업은 서비스(ii)를 같은 크롭사의 외국기업 들에 공급해준 것이 연결거래 관계있는 각측사이 거래때문이다.
- 기업은 통지서 제66/2010/TT-BTC호에 근거해서 (ii)거래에 대한 규정처럼 과세소득의 매출금을 확정해준다.

고객님들은 연결거래의 양도가 관리, 가격이 전 저항, 베트남 국금미수의 방지에 관련된 각 규정에 준수한 연결거래가 확정 문제에 대한 협조와 자문을 필요하면 우리 Grant Thornton 전문가들과하고 연락해주시면 된다.



3. 2017/01/01일부터 사업등록비의 수금기준 변경, 수금대상의 보충 및 등록세 면제.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2017/01/01일부터, 등록세를 **등록 수수료**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등록수수료의 기준은 각 영업조직에 대한 2급으로, 각 개인 영업자에 대한 3급으로 단축된다. 구체적 다음:

o 상품생산, 서비스, 영업활동의 조직들은 법정자금 혹은 투자금이 100억 동 있으면 등록 수수료 = 300만 동/년이고 100억동 이하 있으면 200만 동 이다.

o 지점, 대표사무실, 영업장, 행정사업 단위, 기타 경제조직들은 사업등록 수수료 = 100만 동/년이다.

o 조직의 사업등록 수수료는 영업 등록증인서에 기록된 법정자금에 근거하고 법정자금이 없는 경우에 투자등록증에 기록된 투자금에 근거한다.

각 기업은 2017년의 영업등록금의 입금 시간이 2017/1/30일에 하고 혹은 새 창업기업인 경우에 영업등록증, 투자등록증 및 세무등록서를 30일내에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규정은 2017년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 기업들에게 규정전에 진행해주기를 권고하고 싶다.

각 기업들은 그런 수수료의 의무준수를 위해 각 영업장, 지점, 대표사무실 들을 다시 검토해준것이 필요하다.



4. 저소득 각서의 일부 기준의 신고에 대한 안내(양식No.02/CK-TNCN)

현행규정에 따라 저소득 각서는 소득을 받은 시점에 개인소득세의 임시 면세를 받기위해 거주하고 3개 월이하의 노동계약의 서명 유,무를 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통지 제 92/2015/TT-BTC호와 같이 발급된 양식 02/CK-TNCN처럼 각서를 하는 저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안내해준 증언 목(*)에 총소득의 기준에 대한 신고된 금액이 부양가족 감금 기준으로 과세년도중에 확정하게 된다.

예를 든면:

부양가족인이 없는 각서사람인 경우:

신고 금액이 9 백만 동 x 12 개월 = 1억 8천 만 동.

한명의 부양가족인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1년중 10개월에 부양하면:

신고 금액 = 1억 8천 만 동 + 3백 6천만 동 x 10 개월 = 1억 440만 동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각 기업에게 정보내용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보류중의 각 양식 No. 02/CK-TNCN들을 재검토 해주기를 권고 하고 싶다.

5. 노동자의 외국출장 비용의 공제.

Hồ Chí Minh세무서는 문서 제 10219/CT-TTHT호를 발급해서 기업의 생산, 영업활동목적으로 직원을 외국에 출장시킨 경우를 안내한다. 그에 따르면 발생된 비용들의 공제규정은 다음:

- 출장의 각 비용들은 (항공료, 호텔비용, 식사비) 충분된 영수증, 출장파견문서, 외국에 2.000만 동 이상 비용의 현금으로 결재가 아닌 증빙의 항목들이 법인소득 과세의 소득을 확정할때에 공제 비용으로 처리된다.
- 외국에서 발생된 VAT는 입구의 VAT공제로 신고할수 없다.



6. 수출생산용 수입물건에 대한 면세와 환세되지않는 경우의 추가로 안내:

수출상품생산을 위한 원료를 수입하는 각 기업들을 검토, 확인한 업무진행과정을 통해서 일부 시, 성 의 세관기관엔 다음 경우들이 있다:

- 기업은 생산장이 없고 생산조직을 하지않지만 다른 기업에 생산을 임대 위탁한다.
- 기업은 생산장소가 있지만 생산장소와 건물의 합법적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아직 불충분한다.
- 기업은 생산장소가 있고 생산장소와 건물의 합법적 사용권한이 있다.

기업은 생산장이 없고 생산조직을 하지않아서 다른 기업에 생산을 임대하는 경우엔 세관 국이 다음 안내를 한다. 즉, 기업은 생산장이 없고 생산조직을 하지않아서 다른 기업에 생산을 임대해주거나 생산장이 있지만 생산장소와 건물의 합법적 사용권한을 증명하는서류 들이 아직 불충분한 경우에 **면세 안되고 수입환세도 안된다.**

7. 2017년 이후부터 조건이 있는 사업 분야, 업종들의 리스트.

국회는 법률 제03/2016/QH14호를 통과해서 2014년법의 조건이 있는 사업 분야, 업종들의 리스트에 대한 부록4 와 제6조의 변경보충을 반영하고 그에 따르면 2017/01/01일부터 규정 다음:

- “축폭 영업” 을 영업투자금지의 사업 분야, 업종에 들어 간다.
- , 리스트는 지금 오직243개들이 있고 (현행규정중에 268개들이 있음).

녹음, 녹화, 항법장치 와 차량 생산, 조립, 수입를 위한 위장 소프트웨어, 설비를 영업하는 업종은 조건이 있는 사업분야, 업종으로 되고 2017/1/1일부터 발효한다.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회사 창립 을 하거나 투자제안의 증설을 자문해준 요구가 있으면 우리Grant Thornton 전문가들하고 연락해주시면 된다.



Contact

본 소식통의 정보들은 효력이있는 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 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된 회사 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

(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 정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 지지 않다.

고객님은 우리의 업데이트 소식을
Download 하시려면 다음
Web에 검색해주시것을 바란다.

www.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0 9101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am Ngo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